



제416회국회(임시회)
제 2 차 교 육 위 원 회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RISE 체계 및 글로벌대학 사업의
법적 근거 수립 등〉

■ 강승규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0163호)

2024. 7.

교 육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천우정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3
1. 총괄적 검토	3
2. 주요 사항별 검토	10
(1) 목적 규정(안 제1조)	10
(2) 정의 규정(안 제2조)	12
(3)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및 다른 법률과의 관계(안 제3조~제4조)	17
(4) 시·도 기본계획, 시행계획의 수립(안 제5조~제6조)	20
(5) 지원전략의 수립 및 다른 계획과의 관계(안 제7조~제8조)	26
(6) 지원위원회의 설치 등(안 제9조~제10조)	30
(7) 지방대학에 대한 지원 등(안 제11조~제19조)	37
(8) 대학지원협약의 체결 등(안 제20조)	42
(9) 글로벌대학의 지정 등(안 제21조)	45
(10) 규제특례의 운영 방식(안 제22조~제23조)	55
(11) 지역고등교육위원회의 설치(안 제24조)	62
(12) 전담기관 및 전문기관의 지정 등(안 제25조~제26조)	67
(13) 보칙(안 제27조~제28조)	73
(14) 부칙(안 부칙)	76
※ 참고자료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 체계와 글로벌대학30 프로젝트 개요	79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강승규 의원 등 10인
2. 발의연월일 : 2024. 6. 6.
3. 회부연월일 : 2024. 6. 1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제안이유

학령인구 감소 및 수도권 인구 집중이 지속되면서 지역소멸 위기가 심화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신입생 미충원이 지방대에 집중되고 있음. 따라서, 진정한 지방시대를 열어가기 위해 지방주도 균형발전 전략에 따라 지역주도로 지역·대학의 동반성장을 추진할 수 있도록 실질적 권한 부여가 필요한 시점임.

이에 지역 주도의 지역인재양성 추진과 지역대학 혁신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현행법을 전반적으로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시·도지사는 지역별 여건과 특성을 고려하여 시·도 기본계획과 시·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교육부장관은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지원전략을 수립함(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

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학지원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

다. 지방대학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인재의 양성을 위하여 대학의 혁신을 선도하고, 주변 대학에 파급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글로벌대학을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대학 전반의 혁신을 유도하도록 함(안 제21조).

라. 교육부장관은 지역의 혁신 생태계 구축과 대학 혁신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대학 관련 규제에 대한 특례를 제공하는 제도를 운영함(안 제22조 및 제23조).

마.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의 육성·발전과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에 지역고등교육위원회를 설치함(안 제24조).

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대학에 대한 재정지원을 전담하는 지역별 전담기관의 지정 및 운영의 근거를 마련함(안 제25조).

사. 교육부장관이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활성화를 위한 조사, 성과관리, 평가, 연구 등을 지원하기 위한 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함(안 제26조).

Ⅲ. 검토의견

1. 총괄적 검토

(1) 개정의 필요성

지방대학은 지역발전의 주체로서 교육·경제·사회·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중요한 역할과 기능을 담당하고 있음. 그러나 지방대학의 경쟁력이 저하되는 등 지방대학의 어려움이 점차 가중되고 있음.

이에 지방대학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대책을 수립하고 지역발전을 위한 지역인재 육성의 법률적 토대를 마련하여 지방대학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대 육성법”이라 함)이 지난 2014년에 제정되었으며 이후에도 9차례에 걸쳐 개정이 이루어짐.

이후 지방대학에 대한 지원 규모가 확대되는 등 긍정적인 변화가 있었으나, 지방대학의 신입생 미충원율이 수도권에 비해 크게 높은 등¹⁾ 지방대학 소멸의 위기는 여전히 심각한 문제임.

그 원인에는 중앙정부에서 주도하는 지방대학 지원 정책으로 인해 지역의 개별적인 수요를 충분히 고려하지 못했다는 지적과, 규제특례

1) 2021년도 비수도권 대학의 신입생 미충원율(7.8%)이 수도권 대학 신입생 미충원율(0.8%)보다 7.0%p 높았고, 전문대학도 비수도권 전문대학 미충원율(17.3%)이 수도권 전문대학 미충원율(13.4%)보다 3.9%p 높았음. (「지방대학 신입생 충원 현황과 정책 및 입법과제」, 국회입법조사처)

등이 시행 중이나 그 절차가 복잡하고 까다로워 실효성이 낮다는 등의 지적이 있음.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RISE 체계의 근간이 되는 ‘지방으로의 권한 이양’을 실행하는 의미에서 지역의 대학 지원과 관련된 계획을 지자체가 직접 수립하게 하고,

중앙과 지역에 각각 대학·지역 동반성장 지원위원회와 지역고등교육 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고등교육 거버넌스를 개편하며, 전담기관과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이를 지원하게 하고,

규제특례 절차를 간소화하면서 글로벌대학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개정안에 따르면 중앙부처 주도로 대학지원 사업이 추진되던 기존에 비하여 지역이 실질적인 권한을 부여받게 되면서 지역의 개별적인 특성과 수요를 보다 면밀히 고려할 수 있을 것이며, 신속한 규제특례의 적용이 가능해지면서 적기에 대학이 원하는 특례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만, 안 제2조에서와 같이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의 대상에 수도권 소재 대학까지도 포함하고 있는데, 이는 지방대학의 경쟁력 강화 및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대 육성법의 제명과는 괴리가 있고,

안 제9조의 지원위원회 산하의 전문위원회, 제20조의 대학지원협약 등에 대하여 법문언만으로는 그 내용의 대강을 예측할 수 없어 포괄 위임금지원칙 위반의 여지가 있음.

또한 개정안에서 제시하고 있는 지원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추가로 소요될 것이나 교육부의 지원 외에도 관계부처-지자체와의 협약(MOU) 등을 통한 범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의 투자가 있을 수 있으며, 특히 RISE 체계 내에서 적극적 재정 지원 등이 시행될 가능성이 있으나 현시점에서 교육부의 국고투입 이외의 추가재정소요에 대한 예측이 어렵다는 점²⁾,

글로벌대학 사업과 관련 국회 예산 심의권을 침해했다는 비판과 사업 수행방식에 대한 비판이 있었다는 점 등을 고려한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2) 국회예산정책처의 비용추계서(추계번호 24C0466)에 따르면 시·도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에 대해서만 5억 1,000만 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계하였으나, 이는 개정안의 다른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는 추계가 곤란하여 일부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만 추계한 것이며 개정안의 전체적인 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을 상회할 것임.

(2) 개정안의 주요내용 및 체계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시·도 기본계획과 시·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 및 이에 대한 지원전략의 수립(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 대학 지원협약의 체결 및 이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안 제20조), 글로벌 대학 지정의 법적 근거 신설(안 제21조), 대학 관련 규제에 대한 특례 제공(안 제22조부터 제23조까지),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에 관한 사항 심의를 위한 지역고등교육위원회 설치(안 제24조), 지역별 전담기관의 지정 및 운영 근거 마련(안 제25조), 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근거 마련(안 제26조) 등이 있음.

개정안은 6개의 장(章), 28개의 본칙, 8개의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본칙의 28개 조문은 총칙규정(4개 조문), 실체규정(22개 조문), 보칙(2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음.

<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의 체계 >

현행	개정안
제1장 총칙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 기본계획 등	제2장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지원 등을 위한 시·도 기본계획 등

현행	개정안
제5조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 기본계획의 수립 제6조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제7조 다른 계획과의 관계	제5조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지원 등을 위한 시·도 기본계획의 수립 제6조 연도별 시·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제7조 대학·지역 동반성장 지원전략의 수립 제8조 다른 계획과의 관계
제3장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위원회	제3장 대학·지역 동반성장 지원위원회
제8조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 위원회의 설치 제8조의2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지정관리 분 과위원회 제9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9조 대학·지역 동반성장 지원위원회의 설 치 제10조 지원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4장 지방대학에 대한 지원 등	제4장 지방대학에 대한 지원 등
제10조 교원의 참여 확대 제11조 해외교류·연수의 기회균등 제12조 지역인재의 공무원 임용기회 확대 제13조 공공기관 등의 채용 확대 등 제14조 대학 등의 지역인재 우대 채용 제15조 대학의 입학기회 확대 제16조 국가 등의 지원 제17조 특성화 지방대학의 지정 등 제18조 지방대학의 책무 제19조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 협의회	제11조 교원의 참여 확대 제12조 해외교류·연수의 기회균등 제13조 지역인재의 공무원 임용기회 확대 제14조 공공기관 등의 채용 확대 등 제15조 대학 등의 지역인재 우대 채용 제16조 대학의 입학기회 확대 제17조 국가 등의 지원 제18조 지방대학의 책무
제5장 지역균형인재 고용영향평가	
제20조 정책 등의 지역균형인재 고용영향평 가 실시	제19조 정책 등의 지역인재 고용영향평가 실시
제6장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	
제21조 대학과 지역의 협업	

현행	개정안
제22조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의 지정 등 제23조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 지정의 효과 등 제24조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의 변경·지정해제 등	제5장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 제20조 대학지원협약의 체결 등 제21조 글로벌대학의 지정 등 제22조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을 위한 규제특례 제23조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을 위한 규제특례의 변경·취소 등 제24조 지역고등교육위원회 제25조 지역별 전담기관의 지정 등 제26조 전문기관의 지정 등 제6장 보칙 제27조 업무의 위탁 제28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제2조(적용례)	제1조(시행일) 제2조(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 기본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제3조(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 시행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제4조(중앙행정기관의 시행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제5조(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의 규제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현행	개정안
	제6조(전담기관에 관한 경과조치) 제7조(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지원협의회 와 지역협업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제9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2. 주요 사항별 검토

(1) 목적 규정(안 제1조)

개정안은 목적 규정에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을 추가함(안 제1조).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대학 및 지역 균형인재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방대학의 경쟁력 강화 및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 지원과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 ----- -----.

안 제1조의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은 교육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RISE³⁾ 체계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를 목적 규정에 추가하는 것은 RISE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법령 정비의 일환임.

RISE 체계는 RIS(지역혁신)⁴⁾을 중심으로 기존의 LINC 3.0(산학협력), LiFE(대학평생교육), HiVE(전문직업교육), 지방대활성화 사업과 같은 대학재정지원사업을 통합하는 것으로 교육부는 2025년부터 RISE 체계를 통해 대학재정지원사업의 50% 이상을 지역 주도로 전환할 계

3) RISE : Regional Innovation System & Education

4) 2020년에 도입하였으며 ① 지자체, 대학 및 다양한 지역혁신기관들이 플랫폼을 구축하여 ② 지역의 중장기 발전목표에 부합하는 지역의 핵심 분야를 선정하고, ③ ‘지역 내 대학’들이 핵심분야와 연계하여 교육체계를 개편 · 지역혁신기관과 협업 과제를 수행하는 것을 지원함으로써, 지자체와 대학 간 협력을 기반으로 지역혁신체계를 구축하고, 지방대학의 혁신을 통한 지역혁신 추진을 도모하는 사업.

확임. 이를 통해 시·도 지정 전담기구에 지역 주도 대학재정지원사업 예산을 지원하고, 지자체 주도로 계획을 수립하여 대학재정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임.⁵⁾

<RISE 추진 개요>

목표	“대학이 살리는 지역” 대학의 지역발전 허브화 + “지역이 키우는 대학” 경쟁력 있는 지역대학 육성
중앙·지방 역할 분담	교육부 대학 교육·연구 경쟁력 강화 지원 첨단인재 양성 학술진흥·연구개발 일반재정 지원 지방자치단체 지역 맞춤형 대학 지원 지역 혁신 산학협력·직업교육 대학 평생교육
재정	RIS(지역혁신) 등 교육부 대학재정지원사업 예산 50% 이상(2조원+α)을 지자체 주도로 전환 ※ 타 부처 대학재정지원 사업도 지역주도성이 높은 사업은 단계적으로 RISE와 연계
로드맵	(’23년-’24년) 시범지역 운영 및 추진기반 마련 → (’25년) 전 시·도 RISE 시행

자료 : 교육부

5) RISE 체계의 구체적인 내용은 참고자료에 첨부.

(2) 정의 규정(안 제2조)

개정안은 “지방대학”의 정의를 “대학”과 “지방대학”으로 분설하며,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의 정의 규정을 삭제하는 대신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의 정의 규정을 신설함(안 제2조).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u><신설></u> 1. “지방대학”이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이하 “수도권”이라 한다)이 아닌 지역에 소재하는 <u>「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원격대학 및 각종학교는 제외한다)를 말한다.</u> 2. (생략) 3.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이란 규제특례를 통하여 지방대학의 혁신을 지원하기 위하여 조성된 지역으로서 <u>제22조에 따라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u> <u><신설></u>	제2조(정의) ----- -----. 1. “대학”이란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원격대학 및 각종학교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2. ----- ----- ----- 대학을 ----- ----- -----. 3. (현행 제2호와 같음) <u><삭제></u> 4.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이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의 동반성장을 목적으로 대학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고등교육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대학

현행	개정안
	등”이라 한다)을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을 말한다.

안 제2조제1호와 제2호에서는 현행법 제2조제1호를 분설하여 대학에 관한 정의 규정과 지방대학에 관한 정의 규정을 따로 두었음. 동시에 안 제2조제4호에서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의 대상에 지방대학보다 넓은 개념인 대학을 규정하였음. 이를 통해 RISE 체제의 범위에 지방대학 외에도 수도권 지역에 소재한 대학도 포함하고 있음.

교육부는 지금까지의 지방대학 발전 정책이 수도권을 제외하고 비수도권 중심으로 논의되었으나 전국을 조망하는 관점에서 정책을 논의할 필요성이 대두되었기 때문에 RISE 체제를 전국에 구축할 계획임을 밝힘.

다만, 지방대학의 및 지역균형인재의 육성 및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대 육성법에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의 대학을 지원하는 RISE 체계를 규율하는 것은 다소 어색한 측면이 있음. RISE 체계가 전국의 대학을 지원하는 포괄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음을 감안할 때, 지방대 육성법이 아닌 「고등교육법」에 이를 규율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임.

안 제2조제4호에서는 대학 외에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고등교육 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까지 RISE 체계의 지원 범위에 포함하였음. 이에 해당하는 고등교육기관은 과학기술원(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예술종합학교(문화체육관광부), 한국폴리텍대학(고용노동부) 등임. 이는 타 부처 소관 대학 등 다양한 유형의 고등교육기관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 단위에서 통합적인 지원을 유도하기 위함임.

한편, 개정안은 안 제21조제1항에서 ‘교육부 장관이 지역의 산업·사회와 연계하여 교육·연구 경쟁력을 갖추고 지역혁신을 선도하는 대학을 육성하기 위하여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지방대학’을 “글로벌대학”이라고 정의하고 있으나,

글로벌대학 지정 기준을 대통령령에 위임하였고 그 내용 및 범위를 법률에 명시한 것도 아니어서 글로벌대학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명확하지 않으며, “글로벌대학”이라는 용어는 개정안에서 반복적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RISE 체계의 대표적인 사례로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므로 6) 제2조에 별도의 정의 규정을 둘 필요성이 있음.

6) 「법제이론과 실제」, 국회법제실, 2019, p.260

정의규정은 해당 법률에서 사용되고 있는 용어의 뜻을 명확하게 정하는 규정이다. 해당 법률에서 공통적으로 사용되거나 높은 빈도로 사용되는 용어,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용어, 다른 용어들을 기술하는 데 있어 토대가 되는 용어 및 일반적인 쓰임새와 다르게 사용되는 용어 등의 뜻을 명확히 하여 법률 해석과 적용상의 혼란 및 분쟁을 방지하고, 해당 법률에서 자주 사용되는 용어를 미리 하나의 조문에서 설명하여 둠으로써 법문을 간결하게 표현하는 기능을 한다.

단국대학교, 홍익대학교는 안 제2조제2호 지방대학의 정의 규정에 지방 소재지에 인가된 학생정원, 교지, 교사를 두고 실질 역량을 갖추어 운영하는 교지분리대학(이른바 캠퍼스)⁷⁾도 포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함. 이에 대하여 교육부는 법적으로 대학의 기관에 불과한 캠퍼스를 본교와 동일한 위치에 두는 것은 입법의 오류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다만, 2023년 국정감사 서면질의에 대한 답변에서 교육부는 본교가 수도권에 있지만 지방에 캠퍼스를 두고 있는 경우, 대학재정지원사업에 따라서는 차별의 소지가 있을 수 있으며 교지분리대학(캠퍼스)이 실제로 지역의 산업 발전과 인재 육성 등에 공헌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역혁신을 지원하는 사업의 대상에 포함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되어 '25년부터 시행되는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7) 본교와 하나의 대학으로 학과, 학부, 단과대학 등 학교시설을 위치변경인가(일부 이전) 또는 통합 결과로 2곳 이상의 학습장을 운영. 이하 본교와의 차이점을 표로 정리.

< 본교와 캠퍼스의 차이점 >

구분		본교	캠퍼스
개념		본교와 별개로 설립인가	본교와 동일한 대학의 분리된 교지
설립	요건	교지, 교사, 교원, 수익용 기본재산	교사
	명칭	○○대학교 ○○분교	○○대학교
학생정원		본교와는 별도의 정원 증원	본교의 정원 일부 분리
중복학과		설치 가능	설치 불가
역량진단		본·분교 각각 평가	본교와 캠퍼스 통합 평가
재정사업		본·분교 각각 신청 가능	본교와 캠퍼스 통합하여 신청
운영현황		고려대, 건국대, 동국대, 연세대, 한양대	전국 총 58개교에서 62개 캠퍼스 운영 중

자료 : 교육부

내에서는 캠퍼스도 재정지원 대상에 포함할 예정임을 밝힘.

또한, 경기도는 수도권에 소재하나 열악한 환경에 처한 대학에 대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지방대학의 정의 내 수도권 일부 지역소재 대학을 포함시킬 것을 추가로 요청하였고, 경기도 포천시와 대진대학교는 지방대학의 정의에 ‘인구감소지역 및 관심지역 소재 대학’을 추가하는 의견을 제시함.

이에 대하여 교육부는 비수도권 지역의 인재양성-취창업-정주의 선순환이 구축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지방대 육성법의 입법 취지에 따라 경기 북부 도농복합지역 등까지 그 적용 범위를 확장하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3)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및 다른 법률과의 관계(안 제3조~제4조)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혁신체계와 연계하여 RISE 체계를 구축하여야 함을 추가로 규정하고(안 제3조), 타법과의 관계에서 우선 적용되는 내용에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있음(안 제4조).

현행	개정안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수도권 이외의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의 육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신설>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에 따른 지역혁신체계와 연계하여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수도권이 아닌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책무를 진다. 1.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의 육성 지원을 위한 종합적 시책 수립·시행 2. 지역인재 취업기회 확대를 위한 지원 대책 수립·시행 3. 지역인재 취업이 촉진되는 사회적·경제적 환경 마련 ③ ----- 제1항과 제2항----- ----- 행정적·재정적 ----- <삭제>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는 등 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인재	

현행	개정안
<u>의 취업기회 확대를 위한 지원대책을 수립·시행하고, 지역인재의 취업이 촉진될 수 있는 사회적·경제적 환경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u> ④ (생략)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에 <u>관하여</u>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④ (현행과 같음)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 ----- <u>관한 사항과 지역 혁신중심 대학지원에 관한 사항에 대해</u>----- <u>해서</u>-----.

안 제3조는 비수도권과 수도권으로 나누어 지자체의 책무를 규율하고 있음. 비수도권 지자체는 현행법에 규정되어있는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지원 관련 책무와 함께 RISE 체계를 구축하여야 하는 책무를 지는 반면, 수도권 지자체는 후자의 책무만을 짐.

안 제3조제1항에서 RISE 체계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하 “지방분권균형발전법”이라 함) 제12조⁸⁾에 따른 ‘지역혁신체계’와 연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는데,

‘지역혁신체계’는 지방시대위원회가 수립하는 ‘지방시대 종합계획’⁹⁾

8) **지방분권균형발전법 제12조(지역혁신체계의 구축)**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의 여건과 특성에 적합한 지역혁신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산업계·학계·연구계 간의 협력 활성화, 지역혁신을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 기술 및 기업경영에 대한 지원기관의 확충, 지역혁신 관련 사업의 조정 및 연계운용 등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9) **지방분권균형발전법 제6조(지방시대 종합계획의 수립)** ① 제62조에 따른 지방시대위원회(이하 “지방시대위원회”라 한다)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수렴한 후 5년을 단위로 하는 지방시대 종합계획(이하 “지방시대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다.

③ 지방시대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과 시·도지사 수립하는 ‘시·도지방시대 계획’¹⁰⁾ 등을 지칭하는 것으로, RISE 체계가 추진력을 얻기 위해서는 지방시대위원회 등의 업무 추진 계획과 궤를 같이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위와 같이 규율한 것으로 보임.

안 제3조에 대하여 경기도는 지방대학의 정의에 수도권 일부 지역 소재 대학이 포함된 경우 수도권 지자체도 지방대학을 지원할 책무를 가질 수 있도록 수정을 요청하였으며, 경북대학교는 국가와 지자체, 지방대학의 책무에 ‘취업’을 ‘취·창업’으로 수정하여 취업과 창업을 균형적으로 장려하기 위한 법문언 수정을 요청하였음.

한편 안 제4조는 이 법을 우선 적용하는 사항에 RISE 체계에 관련된 사항을 추가하여 개정안이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과 함께 RISE 체계를 종합적으로 규율함을 명시하고 있음.

-
2. 제3장에 따른 지역균형발전시책 및 지방자치분권 과제의 추진 등에 관한 사항
 3. 제5장에 따른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의 운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10) 지방분권균형발전법 제7조(시·도 지방시대 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해당 시·도의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의 추진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제67조에 따른 시·도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5년을 단위로 하는 시·도 지방시대 계획(이하 “시·도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다.
- ② 시·도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시·도별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시·도별 현황과 여건분석에 관한 사항
 3. 제3장에 따른 지역균형발전시책 및 지방자치분권 과제의 추진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도의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4) 시·도 기본계획, 시행계획의 수립(안 제5조~제6조)

개정안은 시·도지사로 하여금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의 육성·발전과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을 위한 시·도 기본계획(안 제5조)과 이를 시행하기 위한 시·도 시행계획(안 제6조)을 수립하게 함.

현행	개정안
제5조(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 기본계획의 수립) ① 교육부장관은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의 육성·발전을 위하여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제5조(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지원 등을 위한 시·도 기본계획의 수립)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 육성·발전과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 지역인재 육성지원 등을 위한 시·도 기본계획(이하 “시·도 기본계획”--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단서 신설>	② 시·도 기본계획----- ----- . 다만, 수도권 시·도지사가 수립하는 시·도 기본계획에는 제2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항을 생략할 수 있다.
1.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지원을 위한 정책목표 및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1.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을 위한 지역발전전략과 연계 사항
2.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지원 시책과제 및 중기·장기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	2. ----- 육성지원을 위한 시·도의 추진목표, 기본방향 및 중·장기 -----
3.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지원 사업을 위한 재원확보에 관한 사항	3. ----- 육성 지원을 위한 시·도의 -----

현행	개정안
4.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에 관한 사항 <신설> 5. (생략) 6. 지방대학의 특성화에 관한 사항 <신설> 7. 지역인재에 대한 채용촉진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신설> ③ 기본계획은 제8조에 따른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기본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 위 한 시·도의 ----- ----- 5.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 지원을 위한 관계 중앙행정기관, 시·도 및 지역 내 관계 기관 간의 협력에 관한 사항 7. (현행 제5호와 같음) 8. 지역의 산업·사회를 연계하여 교육·연구 경쟁력을 갖춘 글로벌대학의 육성에 관한 사항 9. 외국인 유학생 유치·학업·취업·정주 지원 등에 관한 사항 6. ----- 채용촉진 및 지역 정주----- 10. ----- 육 성과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 ----- ③ 시·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협의를 거쳐 2개 이상 시·도를 통합하여 시·도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④ 시·도지사가 시·도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때에는 대학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제24조에 따른 지역고등교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

현행	개정안
④ 교육부장관은 <u>확정된 기본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제3조제1항에 따른 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u> ⑤ 교육부장관은 <u>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지원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기본계획의 수립절차, 실태조사의 방법과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u><신 설></u> <u>제6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u> ① <u>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소관 분야에 관한 연도별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u> ② <u>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다음 해의 시</u>	<u>는 그러하지 아니하다.</u> ⑤ <u>시·도지사는 제4항에 따라 수립 또는 변경한 시·도 기본계획을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u> ⑥ <u>시·도지사는 시·도 -----</u> <u>위하여 -----</u> <u>----- 있</u> <u>으며, 시·도 -----</u> <u>-----</u> <u>조례로 정한다.</u> ⑦ <u>교육부장관은 시·도 기본계획 수립을 지원하고, 지방자치단체 간 시·도 기본계획의 상호 조정이 필요할 경우 제9조에 따른 대학·지역 동반성장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시·도지사에게 시·도 기본계획의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u> <u>제6조(연도별 시·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u> ① <u>시·도지사는 시·도 기본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연도별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육성지원 등을 위한 시·도 시행계획(이하 “시·도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u> ② <u>시·도지사가 시·도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제24조에 따른 지역고</u>

현행	개정안
<u>행계획 및 지난 해의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교육부장관은 이를 종합·조정하여 제8조에 따른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u> <u>③ 교육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심의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u> <u>④ 교육부장관은 기본계획 수립과 제5조제5항에 따른 실태조사 및 제2항에 따른 추진실적의 종합·조정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 관련 기관·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 요청을 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관련 기관·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u> <u>⑤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u>등교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u> <u>③ 시·도지사는 전년도 시·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및 해당 연도 시·도 시행계획을 매년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u> <u>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및 그 추진실적의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 현행법과 개정안의 기본계획 등 비교 >

구분	현행법		개정안		
	기본계획 (제5조)	시행계획 (제6조)	시·도 기본계획 (안 제5조)	시·도 시행계획 (안 제6조)	지원전략 (안 제7조)
수립 주체	교육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 관의 장 및 시·도지사 (수도권 미포함)	시·도지사 (수도권 포함)	시·도지사 (수도권 포함)	교육부장관
수립 주기	5년	매년	5년	매년	5년

현행법 제5조제1항과 제6조제1항에서는 ‘교육부장관’이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안 제5조제1항과 제6조제1항에서는 ‘시·도지사’가 시·도 기본계획과 시·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함.

이는 산학협력, 평생·직업교육 등 지역 수요의 반영이 필요한 대학 재정지원사업 연계 및 지자체의 참여 강화를 위해 계획 수립 권한을 이양하는 것임. 이를 통해 지자체의 개별적인 특성과 수요를 더욱 면밀하게 고려한 계획이 수립될 수 있다는 점에 그 취지가 있어 보임.

다만, 교육부는 안 제7조에 따른 지원전략만 수립함으로써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육성 발전의 기본적 책임과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는 모습을 띄고 있음.

안 제5조제2항에서는 계획의 내용을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나누어 규정함. 수도권 시·도지사가 수립하는 시·도 기본계획에는 제2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항을 생략할 수 있으며, 비수도권 시·도지사가 수립하는 시·도 기본계획에는 각 호의 사항을 모두 포함하여야 함. 이는 제2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항이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지원에 취지가 맞추어져 있는 반면, 이외의 호는 전국적으로 적용되는 RISE 체계와 관련된 것이기 때문임.

안 제5조제3항에서는 2개 이상 시·도를 통합하여 시·도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였음. 이는 부·울·경 메가시티 추진 사례처럼 지방에서는 2개 이상의 시도가 한 권역이라는 인식이 강하고, 지역인재 정주 촉진정책 추진 시 같은 권역 안의 지자체가 합심하여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더욱 효율적이라는 지자체의 의견을 반영한 것임.

안 제5조제4항에서는 시·도지사가 시·도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때에는 대학등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제24조에 따른 지역고등교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함을 규정함. 이는 시·도지사가 일방적으로 시·도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것을 방지하여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임.

(5) 지원전략의 수립 및 다른 계획과의 관계(안 제7조~제8조)

개정안은 교육부장관으로 하여금 대학과 지역의 동반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지원전략(안 제7조)을 수립하게 하며, 이들 계획이 타법에 따른 계획과 연계하여 수립되어야 함을 규정함(안 제8조).

현행	개정안
<신설>	제7조(대학·지역 동반성장 지원전략의 수립) ① 교육부장관은 대학과 지역의 동반성장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시·도 기본계획을 반영하여 대학과 지역의 동반성장을 위한 지원전략(이하 “지원전략”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지원전략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지원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3. 제21조제1항에 따른 글로벌대학의 지정에 관한 사항 4. 지원전략을 추진하기 위한 재원확보 및 연도별 배분에 관한 사항 5. 시·도 기본계획 및 시·도 시행계획의 추진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에 관한 사항

현행	개정안
제7조(다른 계획과의 관계) 제5조에 따른 <u>기본계획</u> 및 제6조에 따른 <u>시행계획</u>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따른 지방시대 <u>종합계획</u>, 다른 법률에 따른	6.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과 지역 혁신중심 대학지원을 위한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대학 등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 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과 지역혁신 중심 대학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교육부장관이 지원전략을 수립할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수렴한 후 제9조에 따른 대학·지역 동반 성장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교육부장관은 지원전략의 수립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공공기관의 장에게 관련 계획이나 자료의 제공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련 기관·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전략 수립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다른 계획과의 관계) ----- <u>시·도 기본계획</u>, ----- <u>시·도 시행계획</u> 및 제7조에 따른 지원전략----- ----- <u>종합계획</u>, 같은 법 제7조에 따

현행	개정안
지역인적자원 개발·지원 계획과 연계하여 수립되어야 한다.	<u>른 시·도 지방시대 계획 및</u> ----- -----.

안 제7조제1항에서는 교육부장관이 지원전략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음. 이는 지방정부에의 권한 이양이 중요하지만 동시에 중앙정부의 지원 또한 필요하기 때문임. 「지방자치법」에는 고등교육이나 대학에 관한 규정이 없는 등 지방정부에서는 아직 대학지원에 관한 업무 경험이 부족하여 중앙정부가 이를 지원하려는 것임.

동시에 안 제7조제2항제5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시·도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이 수립된 이후에서야 교육부장관이 지원전략을 수립하도록 하여 선후관계를 명확히 함.

이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6조 및 제7조11)에서 시·도지사가 시·도 지방시대 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도

11)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6조(지방시대 종합계획의 수립) ① 제62조에 따른 지방시대위원회(이하 “지방시대위원회”라 한다)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수렴한 후 5년을 단위로 하는 지방시대 종합계획(이하 “지방시대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다.

② 지방시대위원회는 지방시대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제7조제1항에 따른 시·도 지방시대 계획과 제8조제1항에 따른 부문별 계획 및 제9조제1항에 따른 초광역권발전계획(해당 계획이 수립된 경우로 한정한다)을 반영하여야 한다.

제7조(시·도 지방시대 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해당 시·도의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의 추진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제67조에 따른 시·도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5년을 단위로 하는 시·도 지방시대 계획(이하 “시·도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다.

③ 시·도지사는 시·도 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매년 시·도 지방시대 시행계획(이하 “시·도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④ 시·도지사는 시·도 계획, 전년도 시·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과 해당 연도 시·도 시행계

록 하고 이를 반영하여 범부처 조직인 지방시대위원회가 지방시대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것처럼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에서 선도자는 지방정부임을 명백하게 하는 것임.

획을 지방시대위원회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6) 지원위원회의 설치 등(안 제9조~제10조)

개정안은 대학·지역 동반성장 지원위원회를 설치하고(안 제9조), 그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10조)을 규정하고 있음.

현행	개정안
제8조(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위원회의 설치) ① 지방대학 육성지원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제5조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2. 제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 및 추진실적 점검에 관한 사항 3.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른 지역인재의 채용실태 분석 및 평가에 관한 사항 4. 제17조에 따른 특성화 지방대학의 지정에 관한 사항 <신설> 5. 6. (생략) 6.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지원사	제9조(대학·지역 동반성장 지원위원회의 설치) ①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지원과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대학·지역 동반성장 지원위원회(이하 “지원위원회”-----). ② 지원위원회-----심 의한다. 1. 제5조제7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간 시·도 기본계획의 상호 조정에 관한 사항 2. 제7조제1항에 따른 지원전략-----추진----- 3. 제13조 및 제14조----- 7. 제21조에 따른 글로벌대학의 지정 및 지정 취소에 관한 사항 6. 제20조에 따른 대학지원협약 체결에 관한 사항 4. 5. (현행 제5호 및 제6호와 같음) 5. -----육성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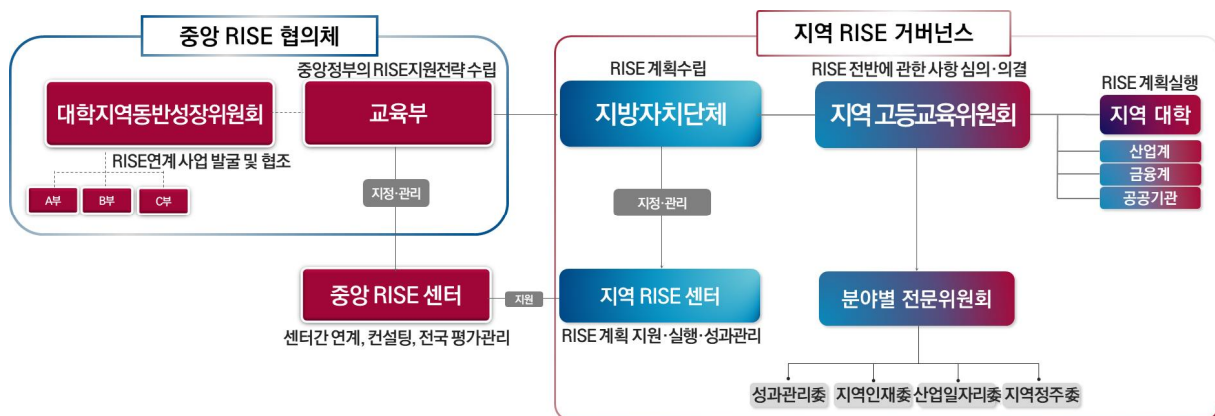
현행	개정안
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7. <u>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의 지정·변경·지정해제 및 특화지역계획의 확정·변경 등에 관한 사항</u> <u><신 설></u> <u><신 설></u> 8. 그 밖에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지원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u><신 설></u> 제8조의2(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지정관리 분과위원회) ① 제8조제2항제7호에 따른 <u>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의 지정·변경·지정해제 및 특화지역계획의 확정·변경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지정관리 분과위원회(이하 “특화지역 분과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이 경우 특화지역 분과위원회의 심의는 위원회의 심의로 본</u>	<u>사업과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u> --- ----- <u><삭 제></u> 8. 제22조 및 제23조에 따른 규제특례의 적용·변경 또는 취소에 관한 사항 9. 제24조에 따른 지역고등교육위원회의 장 또는 대학등의 장이 요청하여 지역의 고등교육에 대한 조정이 필요한 사항 10. ----- 육 성지원과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 ----- ③ <u>지원위원회의 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원위원회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야별로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u> <u><삭 제></u>

현행	개정안
다. ② <u>특화지역 분과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u> ③ <u>특화지역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교육부장관이 된다.</u> ④ <u>그 밖에 특화지역 분과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u>제9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u> ② 위원장은 교육부장관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된다. 1. 기획재정부차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차관, 행정안전부차관, <u>중소벤처기업부차관</u>,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 2. 3. (생략) ③ <u>위원회</u>는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의 제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를 받은 <u>관계 기관의 장</u>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그 밖에 <u>위원회</u>의 구성·운영 등	<u>제10조(지원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지원위원회</u>----- -----. ② ----- ----- --. 1. ----- ----- <u>산업통상자원부차관</u>, <u>보건복지부차관</u>, <u>중소벤처기업부차관</u>, <u>법무부차관</u>----- ----- 2. 3. (현행과 같음) ③ <u>지원위원회</u>----- ----- ----- ----- ---. ----- <u>관련 기관·단체</u>----- -----. ④ ----- <u>지원위원회</u>-----

현행	개정안
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개정안의 대학·지역 동반성장 지원위원회(이하 지원위원회)는 RISE 체계 내에서 지역단위 대학 육성 체계를 범부처 차원에서 지원하기 위한 위원회임. 이는 각 지역에 설치하는 지역고등교육위원회(안 제24조)가 지역 RISE 거버넌스에서 심의 기능을 수행하는 것과 같이 중앙 RISE 협의체에서 RISE 전반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기능을 수행함.

< 지역 고등교육 거버넌스 개편(안) >



자료 : 교육부

지원위원회는 수행하는 기능 측면에서 현행법 제8조에 따른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위원회(이하 육성지원위원회)와 유사함. 다만 지원위원회가 심의하는 사항에 종래의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지원 외에도 안 제8조제2항제6호에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RISE)을 추가하였음. 동일선상에서 지원위원회가 심의·조정하는 사항에 시·도

기본계획 간 상호조정(안 제5조제2항제1호), 지역 내 갈등 조정(안 제5조제2항제9호)을 규정하였음.

또한 안 제9조제3항은 지원위원회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음. 다만, 전문위원회의 인적 구성은 어떻게 되는지, 어떤 사항을 심의하는지에 대해서 개정안에 아무런 규정이 없어 예측에 어려움이 있어 개정안보다 구체적으로 규정될 필요가 있음.

안 제10조제4항에 의거 이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하더라도, 법문언만으로는 그 내용의 대강을 예측할 수 없어 문제점이 해소되지는 않음. 따라서 헌법상 포괄위임금지원칙¹²⁾(「헌법」 제75조)에 반할 소지가 있어 예측 가능한 형태로 조문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음.

한편 현행법 제9조제2항제1호에서 육성지원위원회의 위원은 기획재정부차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차관, 행정안전부차관, 중소벤처기업부차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으로 규정하였으나, 안 제10조제2항제1호에서는 지원위원회의 위원으로 산업통상자원부차관, 보건복지부차관, 중소벤처기업부차관, 법무부차관을 추가로 규정하였음.

12) 법률이 위임하는 사항과 범위를 구체적으로 한정하지 않고, 특정 행정기관에 입법권을 일반적·포괄적으로 위임하는 것은 금지된다는 원칙으로 이는 법률에 하위법령(대통령령, 총리령·부령,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 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등)으로 규정될 내용·범위의 기본적인 사항들을 가능하면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하여, 누구라도 그 법률로부터 하위법령에 규정될 내용의 대강을 예측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

산업통상자원부는 산학협력의 촉진에 필요하다는 점에서, 보건복지부는 지역의료체계 내 의료인력 양성에 관련이 있다는 점에서, 중소벤처기업부는 규제특례 관련 규제자유특구¹³⁾를 담당하고 있다는 점에서, 법무부는 지역특화형 비자제도¹⁴⁾를 담당하고 있다는 점에서 RISE와 밀접한 관련이 있어 협력의 필요성이 있음. 이를 통해 지역단위 대학육성 체계를 범부처적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한편 개정안은 현행법상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을 규제특례 형태로 개편하는바, 관련된 조문인 현행법 제8조제1항제7호, 제8조의2를 삭제하였음. 특히 제8조의2 전체를 삭제한 것은 종래의 특화지역 분과위원회가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의 지정·변경·지정해제 및 특화지역계획의 확정·변경 등에 관한 사항만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설치된 것이기 때문임.

교육부는 민간위원이 주도로 대학의 전반적인 혁신 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성된 ‘글로벌대학위원회’ 등을 전문위원회로 설치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으며, 전문위원회의 역할의 대강을 예측할 수 있도록 필요한 경우 국회 논의과정을 거쳐 이를 수정할 필요가 있음에 공감함.

13)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3. “규제자유특구(규제프리존)”란 광역시·특별자치시 및 도·특별자치도(「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은 제외한다)에서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규제특례등이 적용되는 구역으로서 제75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고시한 구역(이하 “규제자유특구”라 한다)을 말한다.

14) 외국인 비자 정책 수립에 있어 지자체와의 연계 방안을 마련하고 지역의 정확한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비자를 발급하는 제도로 지역 우수인재 유형과 동포 가족 유형이 있음.

안 제10조에 대하여 경상북도는 지원위원회의 구성원을 광역지자체장이 아닌 부단체장으로 수정하여 이해관계 조정의 실효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함.

(7) 지방대학에 대한 지원 등(안 제11조~제19조)

개정안 제11조부터 제19조까지는 타 조문의 변경에 따른 단순 조문 정비가 대부분이며, 안 제17조제4항이 추가되었음.

현행	개정안
제10조 (생략)	제11조 (현행 제10조와 같음)
제11조(해외교류·연수의 기회균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생의 해외교류·연수사업을 지원하는 경우 지방대학 학생에게 균등한 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	제12조(해외교류·연수의 기회균등) ① ---- 지방자치단체(비수도권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제12조 (생략)	제13조 (현행 제12조와 같음)
제13조(공공기관 등의 채용 확대 등) ① (생략)	제14조(공공기관 등의 채용 확대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8조제2항제3호에 관한 위원회의 심의 결과 지역인재의 채용실적이 부진한 공공기관 및 기업에 대하여 그 채용실적을 공개하고, 지역인재 채용을 확대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 ----- 제9조제2항제2호에 관한 지원위원회----- ----- ----- -----.
③ (생략)	③ (현행과 같음)
제14조·제15조 (생략)	제15조·제16조 (현행 제14조 및 제15조와 같음)
제16조(국가 등의 지원) ① ~ ③ (생략)	제17조(국가 등의 지원) ① ~ ③ (현행과 같음)
<신설>	④ 국가는 지원전략의 수립과 제20조에 따른 대학지원협약 체결 시 지역

현행	개정안
제18조(지방대학의 책무) ① 지방대학은 지역발전에 필요한 우수인재의 양성을 위하여 <u>발전계획 및 특성화 계획</u> 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u>균형발전을 위하여 지방대학을 우선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u>
② ~ ④ (생략)	제18조(지방대학의 책무) ① ----- ----- ----- <u>발전계획</u> ----- -----.
제20조(정책 등의 지역균형인재 고용영향평가 실시)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는 소관 정책의 수립·시행 또는 법령의 제정·개정 시 해당 정책 또는 법령이 지역인재의 고용 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평가하는 <u>지역균형인재</u> 고용영향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정책 또는 법령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9조(정책 등의 지역인재 고용영향평가 실시) ① ----- <u>지방자치단체의 장은</u> ----- ----- ----- <u>지역인재</u> ----- ----- -----.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라 실시한 <u>지역균형인재</u> 고용영향평가에 관한 평가서를 작성하여 교육부장관 및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 <u>지방자치단체의 장은</u> ----- ----- <u>지역인재</u> ----- ----- -----.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출받은 평가서에 관한 검토의견을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③ ----- ----- ----- <u>지방자치단체의 장</u> ----- -----.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u>지역균형인재</u> 고용영향평가의 결과를 정책 또는 법령에	④ ----- <u>지방자치단체의 장은</u> ----- <u>지역인재</u> ----- -----

현행	개정안
반영한 경우 그 결과를 교육부장관 및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 -.
⑤ <u>지역균형인재</u> 고용영향평가의 대상·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u>그 밖에 지역인재</u> ----- ----- -----.

안 제12조제1항에서는 이 장(제4장 지방대학에 대한 지원 등, 즉 안 제11조부터 제19조까지)에 한하여 지방자치단체의 범위를 수도권이 아닌 지방자치단체로 한정함. 이는 현행법 제3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범위를 수도권 이외 지방자치단체로 한정하였으나¹⁵⁾, RISE 체계의 수도권 확대에 발맞추어 안 제3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를 수도권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하였기 때문임. 제4장은 그 내용상 지방대학에 대한 지원 및 지역인재의 고용과 관련된 내용이므로 그 범위를 수도권이 아닌 지방자치단체로 한정하는 것임.

따라서 안 제19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현행법상 시·도지사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변경되었지만, 기존과 같이 수도권이 아닌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그 포괄 범위에는 변화가 없다고 할 것임.

한편 안 제17조제4항은 지원전략의 수립과 대학지원협약 체결 시

15)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수도권 이외의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의 육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지방대학을 우선하여 지원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이는 「지방대 육성법」의 본 취지인 ‘지방대학에 대한 두터운 지원’을 존중한 것이므로 그 취지가 타당한 측면이 있음.

다만, 해당 규정만으로 지방대학에 대한 우선적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는지는 분명하지 않음. 지방대학과의 대학지원협약의 체결 결과는 그 성질상 정량적으로 평가될 수 없음. 또한 벌칙이나 과태료 등이 결부된 것이 아닌 단순한 훈시규정에 불과함. 따라서 해당 규정이 본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지, 없다면 어떠한 보완 조치를 마련할 것인지 추가로 검토할 필요성이 있음.

또한, 지난 '24.2.13. 동 법률이 일부개정되어 '24.8.14. 시행 예정인 데(법률 제20252호 지방대육성법 일부개정법률), 안 제14조는 시행 예정인 조문이 아닌 현행 조문에 기반한 개정안으로 보이므로 직전 개정의 취지를 존중하여 안 제14조의 내용을 수정할 필요성이 있음.

현행	법률 제20252호 지방대육성법 일부개정법률
제13조(공공기관 등의 채용 확대 등) 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과 상시 근로자의 수가 300명 이상인 기업(이하 이 조에서 “기업”이라 한다)은 신규 채용인원의 일정비율 이상을 지역인재로 채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공공기관 등의 채용 확대 등) ① ----- ----- <u>공공기관 중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과</u> ----- ----- ----- -----.

현행	법률 제20252호 지방대육성법 일부개정법률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8조제2항제3호에 관한 위원회의 심의 결과 지역인재의 채용실적이 부진한 공공기관 및 기업에 대하여 그 채용실적을 공개하고, 지역인재 채용을 확대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공공기관 및 기업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지역인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비율 이상 채용하는 경우 2. 지역인재 채용 확대를 위한 특별채용제도를 개발·시행하는 경우 3. 지역인재의 현장실습 및 인턴채용을 위한 지원사업을 실시하는 경우 <신 설>	②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소재하는 공공기관은 신규 채용인원의 100분의 35 이상을 지역인재로 채용하여야 한다. 다만, 채용인원이 소규모이거나 고도의 전문인력 및 특수인력의 확보가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8조제2항제3호에 관한 위원회의 심의 결과 지역인재의 채용실적이 부진한 공공기관 및 기업에 대하여 그 채용실적을 공개하여야 하고, 지역인재 채용을 확대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공공기관 및 기업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지역인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비율 이상 채용하는 경우 2. 지역인재 채용 확대를 위한 특별채용제도를 개발·시행하는 경우 3. 지역인재의 현장실습 및 인턴채용을 위한 지원사업을 실시하는 경우

(8) 대학지원협약의 체결 등(안 제20조)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기 위한 대학지원협약의 체결과 그 체결 절차에 관해 규정함(안 제20조).

현행	개정안
<신설>	제20조(대학지원협약의 체결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내용 및 투자 분담 등이 포함된 대학지원협약(이하 “대학지원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 ② 대학지원협약을 체결하려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4조에 따른 지역고등교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부장관에게 대학지원협약안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교육부장관은 대학지원협약을 체결하려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출한 대학지원협약안에 대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학지원협약에 따라 대학의 지역혁신역량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대학지원협약의 사업범위, 내용 및 체결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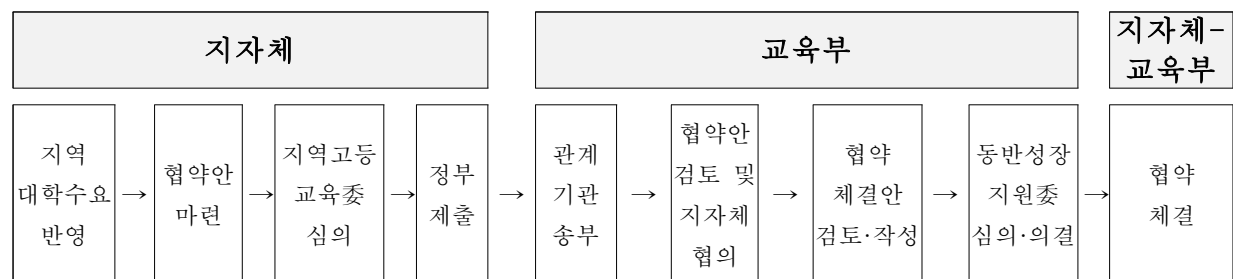
안 제20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 관련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체결하는 협약의 근거를 신설하는 것이며, 대학지원협약에 따른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음.

지방자치단체가 지속적인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얻기 위해 대학지원협약에 명시된 성과관리 조항 등에 구속된다면 지방자치단체의 자기 책임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나,

대학지원협약의 법적 구속력에 관해 명시한 바가 없어 지방자치단체가 협약의 내용을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을 가능성 또한 존재함.

또한 안 제20조제5항에서와 같이 대학지원협약의 사업 범위, 내용 및 체결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에 포괄적으로 위임하였는 바, 대학지원협약 체결 절차에 관한 사항은 다소 경미한 것이며 제2항과 제3항에서 개략적이거나 이를 규율하고 있는 반면,

<대학지원협약 체결 절차 예시(대통령령으로 규정 예정)>



자료 : 교육부

대학지원협약의 대상이 되는 사업의 범위, 내용에 관한 사항은 법문
언만으로는 그 대강을 예측할 수 없어 포괄위임금지원칙에 반할 소지
가 있음.

국회예산정책처의 비용추계서에서도 대학지원협약에 따른 행정적·재
정적 지원에 따른 추가 재정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나 대학지원
협약의 사업범위, 내용 등을 대통령령에 위임하여 비용에 대한 추계에
한계가 있음을 지적하였음.¹⁶⁾

이와 관련하여 경기도는 대학지원협약의 구체적인 사항을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함. 이에 대하여 교육
부는 대학지원협약은 지역 실정을 탄력적으로 반영하여 교육부와 지
자체가 협약 내용을 정할 필요가 있으므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는 입장임.

16) 추계번호 24C0466

(9) 글로벌대학의 지정 등(안 제21조)

개정안은 글로벌대학의 지정 및 취소에 관해 규정함(안 제21조).

현행	개정안
제17조(특성화 지방대학의 지정 등) ① 교육부장관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14조에 따른 지역특화산업 및 초광역권산업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지방대학을 <u>특성화 지방대학</u> 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21조(글로벌대학의 지정 등) ① ---- ----- 지역의 산업·사회와 연계하여 교육·연구 경쟁력을 갖추고 지역혁신을 선도하는 대학을 육성하기 위하여 <u>지원위원회</u> ----- ----- ----- <u>글로벌대학</u> (이하 “ <u>글로벌대학</u> ”이라 한다)-----.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u>특성화 지방대학</u> 이 특성화 분야를 육성하는 데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u>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u> --- -- <u>글로벌대학</u> 이 지역혁신을 선도하는 경우 <u>이</u> ----- -----.
③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u>특성화 지방대학</u> 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고, 지체 없이 해당 지방대학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 <u>글로벌대학</u> ----- ----- ----- -----.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u>특성화 지방대학</u> 으로 지정된 경우	2. ----- <u>지정된</u> -----
3. (생략)	3. (현행과 같음)
④ <u>특성화 지방대학</u> 의 지정이 취소된 대학의 장은 교육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④ <u>글로벌대학</u> ----- ----- -----.

현행	개정안
<u><신 설></u> ⑤ 특성화 지방대학의 지정 및 취소, 이의신청의 기준·절차와 지원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의 지정 등) ① 교육부장관은 지역협업위원회의 장의 신청(지역협업위원회의 장이 둘 이상일 경우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한다)에 따라 지방대학의 학과 개편 및 교육과정 개선 등 고등교육혁신을 추진할 수 있는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이하 “특화지역”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지역협업위원회의 장은 특화지역의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계획(이하 “특화지역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특화지역 지정의 필요성 및 기대효과 2. 특화지역 발전의 기본방향 3. 특화지역의 고등교육혁신을 위하여 필요한 규제특례와 적용범위 4. 특화지역 내 규제특례의 적용을 받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글로벌대학으로 지정된 대학에 대해서는 제22조에 따른 규제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⑥ 글로벌대학----- ----- ----- -. <u><삭 제></u>

현행	개정안
<u>는 고등교육기관</u> <u>5. 그 밖에 특화지역의 발전을 위하여</u> <u>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u> <u>③ 지역협업위원회의 장(공동위원장이 있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말한다. 이하 이 항과 제6항에서 같다)은 특화지역의 지정을 신청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화지역계획을 공고하고 주민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어야 한다.</u> <u>④ 교육부장관은 지역협업위원회의 장의 신청에 따라 특화지역을 지정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후 특화지역 분과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특화지역계획을 확정하고 특화지역을 지정한다.</u> <u>⑤ 제4항에 따라 특화지역의 지정에 관한 협의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교육부장관에게 회신하여야 한다.</u> <u>⑥ 교육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특화지역을 지정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고 관할 지역협업위원회의 장에게 관계 서류의 사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서류를 송부받은 관할 지역협업위원회의 장은 해당 관계 서류를 일반인이 공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u>	

현행	개정안
<u>⑦ 그 밖에 특화지역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u>제23조(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 지정의 효과 등) ① 특화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해서는 특화지역계획에서 정한 내용에 따라 규제특례 등을 적용한다.</u> <u>② 특화지역계획에 따른 규제특례 적용기간은 4년 이내로 하되, 한 차례에 한정하여 2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연장할 수 있다.</u> <u>③ 제1항에 따라 규제특례가 적용되는 특화지역 내 고등교육기관은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제21조제2항에 따른 전담기관에 참여하는 기관으로 한정한다.</u>	<u><삭 제></u>
<u>제24조(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의 변경·지정해제 등) ① 교육부장관은 직접 또는 관할 지역협업위원회의 장의 신청에 따라 특화지역계획 및 특화지역의 지정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부장관이 직접 특화지역계획 및 특화지역의 지정을 변경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할 지역협업위원회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u> <u>② 제1항에 따른 특화지역계획 및 특화지역 지정의 변경에 관하여는 제22</u>	<u><삭 제></u>

현행	개정안
<u>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u> <u>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와 특화지역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u> <u>③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직접 또는 관할 지역협업위원회의 장의 신청(지역협업위원회의 장이 둘 이상일 경우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한다)에 따라 특화지역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u> <u>1. 특화지역의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달성할 수 없을 것이 예상되는 경우</u> <u>2. 특화지역에서 규제특례가 심각한 부작용을 유발하는 경우</u> <u>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u> <u>④ 교육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특화지역의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지역협업위원회의 장과의 협의(관할 지역협업위원회의 장과의 협의는 교육부장관이 직접 특화지역의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와 특화지역 분과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u> <u>⑤ 교육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특화지역계획 및 특화지역을 변경하거나 특화지역의 지정을 해제하</u>	

현행	개정안
<u>는 경우 이를 관보에 고시하고, 관할 지역협업위원회의 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u> <u>⑥ 제3항에 따라 특화지역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 해당 특화지역에서의 규제특례는 적용이 중지된다. 다만, 교육부장관은 규제특례의 적용중지에 따라 해당 규제와 관련된 법령의 적용이 매우 곤란하거나 실익이 없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특화지역 분과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해당 규제특례의 적용을 유지할 수 있다.</u> <u>⑦ 그 밖에 특화지역계획·특화지역의 변경 및 지정해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가 점차 심화되면서 지역인재가 수도권으로 유출되고 있음. 이는 곧 비수도권 지역의 소멸 요인으로 작용함. 이에 따라 경쟁력 있는 지방대학의 육성이 절실한 형편임.

또한 기존의 학과 중심, 사업단 중심의 프로그램 기반 재정지원사업은 대학의 전면적인 혁신과 구조개혁을 이끌어내기에는 한계가 있음. 따라서 대학 전반의 혁신을 지원하는 대학 단위의 전략적 지원방식의 전환이 요구됨.

글로벌대학 30 프로젝트는 이러한 사회적 요구에 발맞추어 지방대학의 혁신을 지원하고, 지원 규모를 대학 단위로 하는 프로젝트임. 구체적으로는 지역산업과 사회와 연계한 특화 분야에서 세계적 경쟁력을 갖추고 지역과 대학의 혁신을 선도하는 지방대학을 '26년까지 30개 내외를 지정하여 5년간 교당 약 1,000억 원을 지원하는 것을 내용으로 함.¹⁷⁾

한편, 현재 글로벌대학 30 프로젝트의 법적 근거는 「고등교육법」 제7조¹⁸⁾ 및 지방대 육성법 제17조이며, 안 제21조는 현행법 제17조(특성화 대학)를 삭제하고 글로벌대학에 대한 조항을 신설하는 것임. 현행법 제17조와 안 제21조의 내용을 비교하면 기존의 특성화대학과 글로벌대학은 크게 두 가지 사항에서 차이가 있음.

첫 번째는 지정 목적의 변화인데, 안 제21조제1항에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14조에 따른 지역특화산업 및 초광역권산업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를 ‘지역의 산업·사회와 연계하여 교육·연구 경쟁력을 갖추고 지역혁신을 선도하는 대학을 육성하기 위하여’로 변경하였음.

두 번째는 행정적·재정적 지원의 주체가 변경된 것인데, 안 제21조

17) 2023년 10개 대학이 지정되었으며, 2024년 7월 기준 20개 대학이 예비지정된 상태로 동년도 8월에 10개 대학이 추가로 본지정될 예정임.

18) 「고등교육법」

제7조(교육재정)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가 그 목적을 달성하거나, 재난 등 급격한 교육환경 변화의 상황에서 교육의 질을 관리하는 데 필요한 재원(財源)을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② 학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과 결산을 공개하여야 한다.

제2항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의 주체가 기존의 ‘교육부장관’에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변경하였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음.

교육부에 따르면, 이는 현행 지역특화산업 전문인력 양성에 국한되지 않고 대학 전반의 혁신을 지원하기 위함이며, 이를 위해 교육부만이 아닌 범부처의 전방위적 지원을 확대하려는 것임.

다만, 글로컬대학 30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다양한 측면의 비판이 있음. 글로컬대학에 대한 지원은 예산안에 별도의 세부사업이나 내역사업으로 편성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기존 예산으로 편성된 세 사업(’23년 기준 지방(전문)대학 활성화 사업, 국립대학 육성사업) 예산 중 인센티브로 편성된 부분을 활용하는 것임.

< 2023년 교육부 대학재정지원 사업 개편 방향 >

국립대	국립대학 육성사업	① 포물러 지원금 (60%, 2,741억원) (국립대 37교 전부)	+	② 평가에 따른 인센티브 (40%, 1,827억) ⇒ <u>글로컬대학 평가</u> + 교육혁신계획 평가
사립대	지방대학 활성화 사업	① 포물러 지원금 (60%, 1,140억) (지방사립대, 66교 전부)	+	② 평가에 따른 인센티브 (40%, 760억) ⇒ <u>글로컬대학 평가</u> + 특성화계획 평가
사립 전문대	지방전문대학 활성화 사업	① 포물러 지원금 (60%, 360억) (지방공립전문대 69교 전부)	+	② 평가에 따른 인센티브 (40%, 240억) ⇒ <u>글로컬대학 평가</u> + 특성화계획 평가

자료 : 교육부

따라서 2023년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글로컬대학 지원에 관한 사항은 예산안에 그 명칭과 액수가 언급되지 않고 있으므로 국

회는 글로벌대학 지원에 대한 심의가 어려운 상황임.

또한 2024년 예산안 검토보고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글로벌대학 지정에 있어 대학별 특수성이 반영되지 못하고 있음. 지난 '23.11.13. 발표된 10개 글로벌대학 중 전문대학은 안동대와 통합을 전제로 선정된 경북도립대가 유일하며, 교육대학도 부산교대만이 부산대와 공동으로 선정되었음. 즉,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보다 일반대학을 중심으로 선정되었음.

이는 글로벌대학 지정을 위한 예비 지정 평가 기준 및 본 지정 평가 기준이 각 대학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하나의 기준으로만 이루어져 있으므로 발생한 문제임.

< 글로벌 대학 예비 지정 평가 기준(안) >

영역	평가 주안점
혁신성 (60점)	• 혁신의 비전과 목표는 기존 대학 운영의 틀을 넘어 과감하고 도전적인가? • 제시한 혁신 계획에 따르면, 해당 대학이 한국의 대학혁신을 대표할 수 있고, 중장기적으로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대학이 될 수 있을 것인가? • 산학협력 허브로서 역할을 하기 위한 혁신적인 방안이 제시되었는가? • 대학 안-밖, 대학 내부(학과, 교수)의 경계를 허무는 시도가 혁신적인가? • 혁신을 위한 걸림돌(저해요소)를 분석하고, 걸림돌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규제혁신 등)이 제시되었는가?
성과관리 (20점)	• 혁신계획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수 있는 혁신 추진체계를 제시하였는가? • 혁신계획의 실행에 따른 자율성과관리 시스템 구축 및 운영계획은 적절한가?
지역적 특성 (20점)	• 해당 대학이 지역 혁신을 위한 산학협력, 창업 등을 위한 허브로서 역할을 하기 위한 대학, 지자체, 산업계의 역할은 명확하며 실행 가능한가?(10점) • 대학, 지자체, 산업계가 연계·협력하기 위한 실행체계가 구축되어 있는가?(10점)

자료 : 교육부

< 글로컬 대학 본 지정 평가 기준(안) >

평가 요소		평가 주안점
대학 실행 계획 (70 점)	계획의 적절성 (50점)	• 글로컬대학 실행계획은 예비지정 때 제시한 과감하고 도전적인 비전 및 목표에 근거하여 수립하였는가? • 글로컬대학의 비전 및 목표, 혁신전략은 지역발전 전략과 긴밀히 연계되어 있는가? • 글로컬대학의 혁신전략 및 실행계획은 대학 구성원 간 합의와 소통의 결과에 근거하여 수립되었는가? • 글로컬대학의 연차별 실행계획 및 투자계획은 비전과 목표 달성을 위해 적절하게 수립되었는가? • 글로컬대학 비전 및 목표 실행에 필요한 규제개혁 사항이 적절하게 제시되었는가?
	성과 관리 적절성 (20점)	• 글로컬대학의 연차별 성과목표와 계획은 도전적이고 달성가능한가? • 글로컬대학으로의 성장과 성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성과관리 체제의 운영계획은 적절한가? • 글로컬대학 추진을 통한 지역사회 차원의 성과목표(지역사회 기여도)가 도전적이고 달성가능한가?
지자체의 지원 및 투자 계획 (30점)		• 글로컬대학에 대한 지자체의 투자 규모 및 계획은 적절한가? • 글로컬대학과 관련한 지역 산업을 육성할 지자체의 계획이 적절하게 반영되었는가? • 글로컬대학의 인재양성, 연구개발, 산학협력의 성과를 지역에서 활용하기 위한 행정적·제도적 지원계획이 적절하게 수립되었는가?

자료 : 교육부

그뿐만 아니라 현재 글로컬대학 추진방안에 따르면 사후적 성과가 아닌 사전계획에 근거한 인센티브를 지급하여 인센티브 지급 후 실제 사업이 계획대로 시행되는 것을 보장할 수 없음. 또한 성과관리를 위한 성과평가 및 중간 모니터링 등은 규정되어 있으나, 이에 따른 협약 해지 및 지원 중지, 사업비 환수 조치에 있어서는 그 기준이 모호한 문제가 있음.

이처럼 글로컬대학 지원의 타당성 관련 다양한 지적이 있었다는 점을 고려하여 종합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필요성이 있음.

(10) 규제특례의 운영 방식(안 제22조~제23조)

개정안은 규제특례의 신청 및 적용 절차(안 제22조)와 변경·취소(안 제23조)에 관해 규정함.

현행	개정안
<신설>	제22조(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을 위한 규제특례) ① 대학지원협약을 체결한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글로벌대학의 장은 교육부장관에게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 및 대학등의 혁신에 필요한 규제특례(이하 “규제특례”라 한다)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대학지원협약을 체결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신청하는 경우 제24조에 따른 지역고등교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후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규제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의 협의를 요청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교육부장관에게 회신하여야 한다. 30일 이내에 회신하지 아니할 경우 소관 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해당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허가 등이 필요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④ 교육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글로벌대학이

현행	개정안
<신설>	<u>신청한 규제특례에 대하여 법령 정비가 필요하지 아니한 신청내용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처리하여야 하고, 규제특례 기간 종료 전이라도 법령을 정비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즉시 법령 정비에 착수하여야 한다.</u> <u>⑤ 그 밖에 규제특례의 신청 및 적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u>제23조(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을 위한 규제특례의 변경·취소 등)</u> <u>① 제21조에 따른 규제특례 적용기간은 4년 이내로 하되, 한 차례에 한정하여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u> <u>② 교육부장관은 제22조제1항에 따른 규제특례를 신청한 자의 요청에 따라 규제특례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22조제2항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u> <u>③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직접 또는 제22조제1항에 따른 규제특례를 신청한 자의 요청에 따라 규제특례의 적용을 취소할 수 있다.</u> <u>1. 규제특례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달성할 수 없을 것이 예상되는 경</u>

현행	개정안
	우 2. <u>규제특례가 심각한 부작용을 유발하는 경우</u> 3. <u>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u> ④ <u>교육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규제특례의 적용을 취소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후 지원위원회</u>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⑤ <u>그 밖에 규제특례의 연장·변경 및 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글로벌대학에 대해서는 규제특례를 적용할 수 있음(안 제21조 제5항). 규제특례는 ‘규제(「행정규제기본법」 제2조제1항제1호¹⁹⁾에 따른 행정규제)의 완화, 규제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적용을 제외하거나 규제 권한을 이양하는 것’²⁰⁾을 의미함.

현행법상으로는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에서 규제특례제도를 시행하고 있고 구체적인 사례는 아래와 같으며,

19) 「행정규제기본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행정규제”(이하 “규제”라 한다)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민(국내법을 적용받는 외국인을 포함한다)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서 법령등이나 조례·규칙에 규정되는 사항을 말한다.

20)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2조제3호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 주요 규제특례 사항>

현행 규정		규제특례 부여사항	적용지역
· '이동수업 운영지침'*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는 범위에서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이동수업(학교 밖 수업) 운영 · * 대상학교, 대상 학위과정, 대상 학생, 수업지역, 교육과정, 교원 등 규정		· 지역별 '이동수업 승인기준'을 마련하고, 그 기준에 따라 지역협업위원회의 승인을 하는 경우, 이동수업 운영 가능	충북 울산·경남 광주·전남 대전·세종·충남
· 국내 타 대학에서 수강한 학점은 졸업 필요학점의 2분의 1까지만 소속대학 학점으로 인정		· 다른 대학에서 졸업 필요학점의 4분의3 까지 소속대학의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하여 대학 간 공동교육과정 활성화 기대	광주·전남 대전·세종·충남
· 겸임교원 채용 시 강사와 동일하게 1년 이상 임용기간, 공개채용 절차를 거쳐야 함	⇒	· 강사와 겸임교원 차이를 고려하여, 바이오헬스분야 겸임교원 채용 시 학기 단위 임용, 특별채용 절차 허용	충북
· 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운영 시 사업비(국고+지방비)에서 현장실습비 최대 25% 지원		· RIS참여기업 등*에서 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운영 시 사업비(국고+지방비)에서 현장실습비 50% 지원 · * RIS참여기업 및 「혁신도시특별법」에 따라 지역인재 채용 의무가 있는 공공기관	대전·세종·충남
· 외부카메라를 부착한 자율주행 로봇을 활용하여 캠퍼스 밖에서 실증 교육과정 운영 불가능 · ※ 도로교통법상 로봇의 보도 통행이 불가하며, 개인정보보호법·공원녹지법·보행안전법의 적용 여부가 불명확하여 자율주행 로봇을 활용한 실증 교육과정의 운영이 어려움		· 도심공원 내 안전한 주행환경 확보, 개인정보보호 조치 등을 취한 경우 외부카메라를 부착한 자율주행 로봇을 활용하여 캠퍼스 밖 인근 도심공원에서 실증 교육과정 운영 특례	대전·세종·충남

자료 : 교육부

종전에 적용하던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의 규제특례에 대해서는 안 부칙 제5조의 경과규정에서 정한 바와 같이 개정규정에 따라 규제특례를 부여받은 것으로 보며 종전 규정에 따라 적용된 규제특례기간을 적용함.

안 제22조와 제23조는 규제특례 절차를 간소화하여 고등교육형 규

제 샌드박스를 운영한다는 데 그 취지가 있음. 이는 종래의 고등교육 혁신특화지역 관련 조문(현행법 제22조부터 제24조까지)을 삭제하고 대신 도입하려는 조문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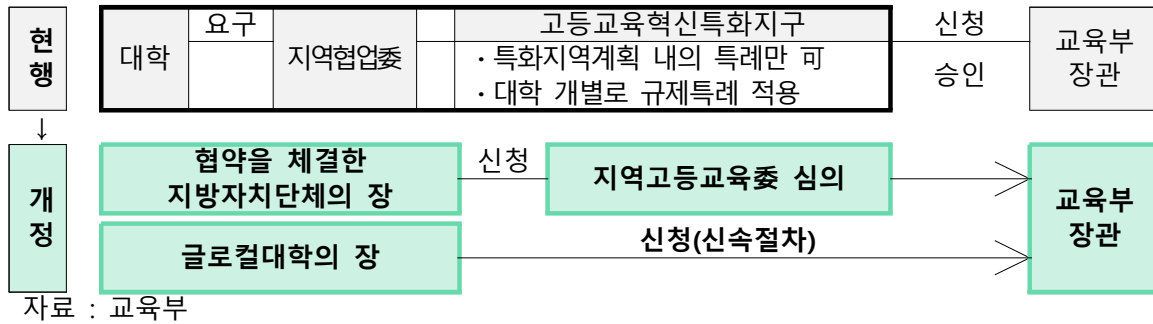
종래의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 체계 내에서는 지역협업위원회에서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계획을 수립하고 계획 내에 포함된 특례만 가능했음. 결국 계획에 얽매어 대학이 원하는 특례를 받을 수 없는 한계가 발생했음.

또한 규제특례를 적용하는 절차 역시 신청 이후 계획 수립 및 공고, 주민 의견 청취를 거쳐야 했음. 이로 인해 시의성이 요구되는 규제특례가 신속하게 적용되기 어려웠음.

안 제22조제1항에 따르면 규제특례 신청 절차를 글로컬대학인지 여부에 따라 이원화하며, 전반적인 절차를 간소화하려는 것임. 글로컬대학으로 선정된 대학은 곧바로 교육부장관에게 규제특례를 신청할 수 있음. 글로컬대학으로 선정되지 않은 대학은 지자체장에게 신청한 후 대학지원협약을 체결한 지자체의 장이 지역고등교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음.

어떤 경우에도 주민 의견 청취 절차는 생략되나, 지자체가 RISE 체계에서 지역주민의 수요를 반영한 규제특례를 실시한다는 점에서 중복적인 절차가 될 수 있음을 고려한 것으로, 이를 통해 규제특례가 보다 신속하게 적용될 수 있어 적시성을 확보할 수 있음.

＜ 규제특례 운영방식 변화 ＞



안 제22조제2항에서는 교육부장관에게 규제특례 신청이 있는 이후에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후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규제특례를 적용할 수 있음을 규정함. 이는 규제특례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파악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하고자 하는 취지임. 이는 규제특례의 첫 신청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변경 및 취소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됨(안 제23조제2항, 제4항).

또한 안 제22조제3항에서는 교육부장관의 협의 요청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교육부장관에게 회신하도록 규정하였으며, 30일 이내 회신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허가가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규정함. 해당 규정은 규제샌드박스와 관련된 타 입법사례와 유사한 규정으로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에서의 규제 신속확인²¹⁾과 그 내용이 유사함.

21)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85조(규제의 신속확인) ① 규제자유특구에서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등을 추진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 시·도지사에게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등과 관련된 허가등의 필요 여부 등을 확인(이하 “규제확인”이라 한다)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규제확인 요청을 받은 시·도사는 권한의 범위 내에서 규제확인을 할 수 있으며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규제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규제확인에 관한 사항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이 협의를 지연시키는 등 관련 업무를 게을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더욱 신속한 규제특례 적용을 위해 그 취지가 타당하다고 할 것임. 안 제22조제4항 역시 유사한 취지임.

안 제23조제1항에서는 규제특례의 적용 기간을 4년 이내로 하면서 한 차례에 한정하여 2년 이내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음. 이는 일반적인 규제특례의 적용 기간인 2년 이하²²⁾와는 상이함. 이는 일반 대학에서 4년의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학사 학위를 수여하는 것과 관련지어 기간을 설정한 것임.

안 제23조제3항에서는 규제특례가 심각한 부작용을 유발하는 경우 등에 교육부장관이 규제특례의 적용을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한바, 이는 규제특례의 성질상 예상치 못한 문제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고 그로 인한 부작용을 적절히 통제하기 위한 것임.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규제확인에 관한 사항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규제확인에 관한 의견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회신하여야 한다. 다만, 규제확인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규제확인을 요청한 자에게 자료 보완을 요구한 경우에는 그 보완에 걸린 기간은 해당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⑤ 제4항에 따른 기간 내에 회신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소관 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해당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허가등이 필요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22) 「산업융합 촉진법」

제10조의3(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⑩ 규제특례의 유효기간은 2년 이하의 범위에서 규제특례심의위원회가 정한다.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38조의2(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④ 제3항에 따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유효기간은 2년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1) 지역고등교육위원회의 설치(안 제24조)

개정안은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의 육성·발전과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지역고등교육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장과 위원의 구성, 실무조직과 전문위원회에 대해 규정함(안 제24조).

현행	개정안
제19조(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협의회) ① 지방자치단체는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의 육성·발전에 관한 중요 사항을 협의·조정하기 위하여 대학·산업체 및 연구기관이 참여하는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24조(지역고등교육위원회) ①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의 육성·발전과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에 관한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에 지방자치단체, 대학등, 지방교육행정기관, 공공기관 및 기업의 장 등으로 구성된 지역고등교육위원회(이하 “지역고등교육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시·도 기본계획 및 시·도 시행계획의 수립·변경 및 추진실적 점검에 관한 사항 2. 제20조제2항에 따른 대학지원협약안에 대한 심의 및 대학지원협약 추진실적 점검에 관한 사항 3. 제25조에 따른 지역별 전담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에 관한 사항 4. 제22조 및 제23조에 따른 대학지원협약을 체결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신청하는 규제특례에 관한 사항

현행	개정안
	5. 지역 내 산업과 대학 간 산학협력 촉진을 위한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6. 대학의 평생교육 기능 강화에 관한 사항 7. 대학과 초·중등학교 간 협력 프로 그램 개발 및 시행에 관한 사항 8. 유학생 유치 등과 관련된 국제협력 에 관한 사항 9. 지역 대학생들에 대한 정주 여건 조성에 관한 사항 10. 지역 대학생들에 대한 취업 지원 등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지역고등교육위원회의 장 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신 설>	② 지역고등교육위원회는 해당 지역 의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대학등 의 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공동위원장으로 한다.
<신 설>	③ 지역고등교육위원회의 위원은 대 학과 지역의 동반성장을 위한 지원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으로 구성한다.
<신 설>	④ 지역고등교육위원회는 업무를 효 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역고등 교육위원회에 실무조직과 분야별 전 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협의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광역시·특별자치시· 도 및 특별자치도의 조례로 정한다.	⑤ 그 밖에 지역고등교육위원회 및 제4항에 따른 실무조직과 전문위원회 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현행	개정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례로 정한다.

지역고등교육위원회는 지역의 고등교육정책 전반을 논의하기 위해 광역지자체(시·도)별로 설치하는 위원회임. 이는 현행법 제19조의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지원협의회와 동법 제21조의 지역협업위원회를 통합하여 정비하는 위원회임.

< 지역단위의 위원회 정비(안) >

현행	개정안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지원협의회*(제19조)	지역고등교육위원회(제24조)
지역협업위원회**(제21조)	

자료 : 교육부

기존의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지원협의회는 조례로서 부지자체장 단독 위원장을 규정할 수 있는 등 대학과 수평적 거버넌스 구조가 부재하였음. 또한 지역협업위원회는 RIS 사업(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사업) 운영을 위한 협의체로 RIS 사업 운영 심의 등 한정적인 목적으로만 운영되었음. 뿐만 아니라 육성지원협의회와 지역협업위원회라는 두 조직이 있어 거버넌스가 일원화되지 못해 일선에서는 혼란이 있었음.

이에 반해 안 제24조의 지역고등교육위원회는 지자체의 장과 대학

등의 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공동위원장으로 하며(안 제24조 제2항) 심의하는 사항에 시·도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대학지원협약에 관한 사항, 지역별 전담기관의 지정 및 취소에 관한 사항 등(안 제24조 제1항 각 호)을 포함하여 RISE 체계 전반에 대한 사항을 심의할 수 있도록 하였음.

이를 통해 지자체와 대학이 수평적 지위에서 협의할 수 있는 거버넌스를 구축할 수 있음은 물론, 지역고등교육위원회는 RIS 외에도 RISE 체계 전반을 지원하는 지역의 한 축으로 기능할 수 있음. 또한 지역고등교육위원회로 지역 거버넌스를 일원화하여 일선에서의 혼란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한편 안 제24조 제4항에서는 지역고등교육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실무조직과 전문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음. 실무조직은 안 제25조에 규정된 지역별 전담기관으로 이른바 지역 RISE 센터를 의미하는 것임.

또한 전문위원회와 관련하여 개정안의 문구만으로 정확히 예측할 수 있는 것은 아니나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그 예시로 성과관리위원회, 지역인재위원회, 산업일자리위원회, 지역정주위원회 등이 있음. 또한 운영위원회와 같은 조직을 두어 지역고등교육위원회의 의제를 마련하고, 종래에 부족한 것으로 평가되었던 산업계 의견수렴을 더욱 강화하는 등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힘.

한편 행정안전부는 지역고등교육위원회를 지역 재량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수정하고, 유사한 위원회가 있는 경우 유사 위원회가 지역고등교육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도록 단서조항을 추가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을 제시함.

이에 대하여 교육부는 현행 「지방대 육성법」상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협의회, 지역협업위원회를 통합하여 지역고등교육위원회로 개편 추진하는 것이며 지역별 하나의 고등교육 거버넌스는 반드시 설치할 필요가 상당하므로 임의규정이 불가하다며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또한 경상북도와 충청북도는 지역고등교육위원회 위원장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되 필요시 대학의 장과 공동위원장이 가능하도록 단서 신설을 요청하였으며, 분과위원회 조항을 신설하여 분과위원회의 장을 대학의 장으로 둘 수 있도록 수정을 요청하였음. 한편, 경상남도는 지역이 자율적으로 지역고등교육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함.

교육부는 이에 대하여 대학과 지역이 협력을 기반으로 지역인재 양성 및 지역대학 육성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지자체 단독의 거버넌스 지양할 필요가 있으며 시도지사 단독위원장보다 공동위원장으로 규정하는 것이 지역대학과 협력적인 거버넌스의 기틀 마련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며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12) 전담기관 및 전문기관의 지정 등(안 제25조~제26조)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별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안 제25조), 교육부장관이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안 제26조) 규정함.

현행	개정안
제21조(대학과 지역의 협업)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에 따른 지역혁신체계의 구축 및 지방대학의 지역혁신역량 강화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와 지방대학의 협업체계를 육성하는 데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협업체계를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관련 업무를 종합적으로 수행하는 전담기관을 각 지역별로 지정할 수 있으며, 해당 기관이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출연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각 지역의 협업체계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제2항에 따른 전담기관 소속으로 해당 지역에 소재하는 지방자치단체, 고등교육기관, 공공기관 및 기업의 장 등으로 구성된 위원회(이하 “지역협업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25조(지역별 전담기관의 지정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 사업과 대학등과의 협업체계를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지역별 전담기관(이하 “지역별 전담기관”이라 한다)을 지역고등교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별 전담기관이 제1항에 따른 업무를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별 전담기관이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에 관한 업무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 또는 출연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별 전담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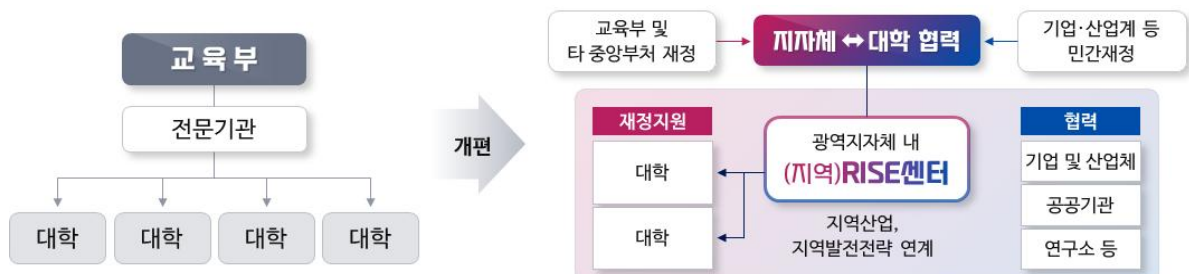
현행	개정안
④ 지역협업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지역협업위원회의 장”이라 한다)은 해당 지역의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 외에 고등교육기관의 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도 공동위원장이 될 수 있다. ⑤ 제2항에 따른 전담기관의 지정·운영,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지역협업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u>지정을 받은 경우</u> 2.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에 관한 업무의 효율적 수행이 어려워 교육부장관이 전담기관 지정취소를 요청하는 경우 3. 제6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4. 그 밖에 중대한 공익상의 사유로 지역별 전담기관의 업무를 계속 수행하기 어렵게 된 경우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4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⑥ 그 밖에 지역별 전담기관의 지정기준, 절차, 운영 및 지정 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조례로 정한다.
<신설>	제26조(전문기관의 지정 등) ① 교육부장관은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 체계 활성화를 위한 조사·연구·성과관리

현행	개정안
	<u>· 데이터관리 등에 관한 사무를 종합적이고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u> ② <u>교육부장관은 전문기관이 제1항에 따른 업무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u> ③ <u>교육부장관은 전문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u> 1. <u>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u> 2. <u>제5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u> 3. <u>그 밖에 중대한 공익상의 사유로 전문기관의 업무를 계속 수행하기 어렵게 된 경우</u> ④ <u>교육부 장관은 제3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u> ⑤ <u>그 밖에 전문기관의 지정 기준, 절차, 운영 및 지정 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안 제25조제1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고등교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역별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함. 지역별 전담기관은 이른바 ‘지역 RISE 센터’로서 RISE 계획을 지원하고 실행하며 그 성과를 관리하는 기관임.

안 제25조제3항은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RISE 센터에 보조 또는 출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기존에는 교육부가 한국연구재단을 통해 각 대학에 예산을 배분하였지만, RISE 체계 내에서는 교육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예산을 출연 또는 보조받은 지역 RISE 센터가 예산을 배분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됨.

< 지역주도 대학재정지원사업 체계(안) >



자료 : 교육부

안 제25조제4항은 지역별 전담기관이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음을 규정함. 각 호에서 그 사유를 나열하고 있으며 제4항 단서에서 제1호와 제2호에 해당할 때는 반드시 그 지정을 취소해야 함을 규정함. 이는 지역 RISE 센터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는 것을 방지하며 지자체와 지역 RISE 센터의 부정한 결탁을 방지한다는 측면에서 그 취지가 긍정적임.

다만, 제2호에서 지역혁신중심대학지원에 관한 업무의 효율적 수행이 어려워 교육부장관이 전담기관 지정취소를 요청할 때 제4항 본문 단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은 반드시 그 지정을 취소해야 한다고 규정하였는데, 이는 다소 이례적이라고 볼 수 있음.

유사 입법례로서 「문화예술교육 지원법」에서도 지역문화예술교육 지원센터와 관련, 지정권자가 아닌 자가 지정 취소를 요청할 수 있지만 지정권자가 곧바로 그 지정을 취소해야 한다고 규정하지는 않음.²³⁾ 또한, 제2호의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에 관한 업무의 효율적 수행이 어려운지 여부는 다소 추상적인 개념이며 주관성이 개입될 여지가 있음.

또한 교육부장관의 요청이 있기만 하면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는 것은 RISE 체계의 ‘지방에의 권한 이양’이라는 취지에 부합하지 않음. 따라서 제2호의 규정은 개정안 전체의 입법 취지 및 안 제25조제4항의 입법 취지, 유사 입법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검토할 필요성이 있음.

안 제25조제5항에서는 지정 취소 시에 청문을 실시하도록 규정하였

23)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제10조(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설립 등) ⑥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지역문화예술교육 지원의 효율적인 실시 및 이에 필요한 참여주체 간의 협의·조정 그 밖의 협력 증진을 위하여 시·도지사 또는 기초자치단체장과의 협의를 거쳐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이하 "지역센터"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제10조의2(지역센터의 지정취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0조제6항에 따라 지정된 지역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10조제9항에 따른 지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3. 업무수행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시·도지사 또는 기초자치단체장이 지정취소 협의를 요청한 경우

음. 한편 제6항에서는 지역별 전담기관의 운영 및 지정 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였는바, 이는 지역별 실정에 맞는 운영 규정을 두려는 것으로 이해됨.

안 제26조제1항은 교육부장관이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음을 규정함. 전문기관은 지역에 대한 조사·연구·성과관리·데이터관리 등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 지역 RISE 센터를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함. 교육부에 따르면, 전문기관은 과거 교육부로부터 출연금을 받아 대학 지원 사업을 주관해 온 한국연구재단으로 지정할 계획임을 밝힘.

안 제26조제3항과 제4항에서는 안 제25조와 유사하게 지정 취소 및 청문 실시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음. 또한 안 제26조제5항에서는 전문기관의 운영 및 지정 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13) 보칙(안 제27조~제28조)

개정안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관련 기관·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안 제27조), 이 법에 따른 위원회와 전담기관 및 전문기관 등에 대해서는 그 단체의 임직원 및 위원 등에 대하여 공무원으로 보는 것을 규정하고 있음(안 제28조).

현행	개정안
<신설>	제27조(업무의 위탁) 교육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관련 기관·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제28조(별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법인 또는 단체의 임직원 및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 제9조제1항에 따른 지원위원회 2. 제9조제3항에 따른 전문위원회 3. 제24조제1항에 따른 지역고등교육위원회 4. 제24조제4항에 따른 분야별 전문위원회 5. 제25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한 지역별 전담기관 6. 제26조제1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지정한 전문기관 7. 제27조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업무의 일부를 위탁한 기관 또는 단체

안 제27조는 규제특례 등 분야에서 업무의 일부를 관련 기관·단체에 위탁하도록 하는 데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규정임. 유사한 규제특례 제도를 운용하는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융합 촉진법」 제36조제2항의 위탁 규정과 동법 시행령의 규정을 바탕으로 규제특례의 신청과 관련된 절차를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에 위탁²⁴⁾하고 있음.

교육부는 규제특례 제도 관련 도입 초기에 있으며, 향후 위탁의 추가적인 수요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위탁 규정을 둘 필요성이 있다는 입장임.

한편 안 제28조 관련,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²⁵⁾

24) 「산업융합 촉진법」

제36조(위임 및 위탁) ② 이 법에 따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산업융합지원센터나 관계 전문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산업융합 촉진법 시행령」

제38조(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8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상공회의소법」에 따른 대한상공회의소 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산업융합 관련 전문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4. 법 제10조의3제1항에 따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신청의 접수

5. 법 제10조의3제3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 대한 통보 및 회신문서의 접수

6. 법 제10조의3제9항에 따른 심사기준의 통보

7. 법 제10조의5제2항에 따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유효기간 연장신청의 접수 및 연장 결과 통보

7의2. 법 제10조의5제3항에 따른 규제특례 사항과 관련한 법령의 정비 요청 접수

8. 법 제10조의5제9항에 따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적용 및 사업 결과 접수

25) 「형법」 제129조(수뢰, 사전수뢰) ①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②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될 자가 그 담당할 직무에 관하여 청탁을 받고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후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제130조(제삼자뇌물제공)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를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제131조(수뢰후부정처사, 사후수뢰) ①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전2조의 죄를 범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상 부정한 행위를 한 후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제삼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를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③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었던 자가 그 재직 중에 청탁을 받고 직무상 부정한 행위를 한 후 뇌

은 수뢰 등에 관한 규정으로 대학지원협약의 체결 등과 같이 이권이
개입될 가능성이 있는 영역에 이를 차단하는 것임. 따라서 안 제28조
에서 공무원 의제 규정을 둔 취지는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임.

물 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④전3항의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제132조(알선수뢰)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
하여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
한다.

(14) 부칙(안 부칙)

개정안은 이 법의 시행일을 공포 후 6개월로 정하고 있으며(안 부칙 제1조)과 이 법 시행에 따른 경과조치(안 부칙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이 법률 개정에 따른 타 법률 개정 사항(안 부칙 제8조), 타법과의 관계(안 부칙 제9조)를 규정하고 있음.

개 정 안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 기본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 기본계획은 제7조에 따라 지원전략이 수립되기 전까지는 이 법에 따른 지원전략으로 본다.
제3조(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 시행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연도별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 시행계획은 제6조에 따른 시·도 시행계획이 수립되기 전까지는 이 법에 따른 시행계획으로 본다. 다만, 제6조제3항에 따른 전년도 시행계획, 해당 연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할 때에는 이 법이 시행되는 연도 및 그 다음 연도까지는 종전의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중앙행정기관의 시행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에서 수립하는 연도별 시행계획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폐지한다.
제5조(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의 규제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

개 정 안

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지정관리 분과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은 지원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으로 보며, 종전의 규정에 따른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의 규제특례 적용사항은 제22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규제특례를 부여받은 것으로 보며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적용된 규제특례기간을 적용한다.

제6조(전담기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전담기관은 이 법에 따라 지역별 전담기관이 지정되기 전까지는 이 법에 따른 지역별 전담기관으로 본다.

제7조(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지원협의회와 지역협업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지원협의회와 지역협업위원회는 이 법 시행 이후 6개월의 범위에서 이 법에 따라 지역고등교육위원회가 구성되기 전까지는 이 법에 따른 지역고등교육위원회로 본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지원협의회 및 지역협업위원회 중 어느 하나를 지역고등교육위원회로 볼 수 있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지원협의회 및 지역협업위원회가 심의한 사항은 지역고등교육위원회가 심의한 것으로 본다.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0항 중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제2

개 정 안

조제1호에 따른 지방대학(이하 “지방대학”이라 한다)에 대하여 같은 법 제16조”를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지방대학(이하 “지방대학”이라 한다)에 대하여 같은 법 제17조”로 한다.

제9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안 부칙 제2조부터 제7조까지의 경과조치는 전부개정에 따른 입법 공백을 예방하기 위한 것임. 종전에 시행되던 제도들과 연속성을 확보한다는 점에서 그 취지가 긍정적임.

다만, 타 위원회 및 전담기관 등에 대해서는 모두 경과규정이 있지만 안 제9조의 지원위원회와 유사한 현행법 제8조의 육성지원위원회와 관련해서는 경과규정이 부재한 상황임. 수행하는 기능이 유사하며, 입법 공백을 예방한다는 측면에서 마찬가지로 경과규정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됨.

문 의 처

02)6788-5184

참고 1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RISE) 체계 추진현황

□ 개요

- 교육부는 대학지원 행·재정 권한을 지자체에 위임·이양하고 지자체는 대학과 협력적 파트너십을 구축하여 지역발전전략과 연계한 대학지원 실시
⇒ '25년 전면시행에 앞서 **RISE 추진체계, 계획수립, 예산확보, 법적 근거 마련** 등 RISE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한 제반사항 정비 지속

□ 추진 현황

- **(추진체계)** 쏠자지체에서 대학지원 전담부서* 및 지역**RISE센터**** 지정 完
* (예) 대구, 국(局) 수준의 부서 설치(24.3.), 충남, 18명 규모 고등교육정책담당관 설치 完
** 지정 기관 현황 : 테크노파크(8곳 부산전북대전울산제주인천광주세종), 정책연구원(5곳 경북대구충북충남서울), 평생교육원(3곳 강원경남전남), 경제과학진흥원(1곳 경기)
- **(계획수립)** 17개 지자체 모두 **RISE 5개년('25.~'29.)** 계획 시안 제출 완료(24.2.) 및 전문가 컨설팅을 통한 시도별 계획 보완 진행(24.4.~)
- **(예산확보)** LINC 등 5개 사업 통합, 지역수요 반영이 필요한 사업 추가 발굴, 규모 조정 등을 통해 **'25년 예산 2조원 규모 확보 목표**
※ '24. 예산 기준 약 1.2조원 기 확보 : RIS 3,420억, LINC 4,070억, 지방대 활성화 3,125억, HiVE 900억, LIFE 510억

□ 향후 주요 일정

- **(계획)** 컨설팅(상시) → 시도별 RISE 계획 확정(12월)
- **(예산)** 기재부 심의 및 국회 제출(~8.31.) → '25년 RISE 예산 확정(12월)

참고 2

글로벌대학30 프로젝트 개요

- **(목적)** 대학지원 권한을 지자체에 위임(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 RISE)*하면서 대학·지역 상생을 선도할 대학을 전략적으로 육성하여 성과 창출 도모
 - * 대학·지역 협력 거버넌스로 지역발전계획과 연계하여 대학을 지역혁신의 거점으로 육성하는 체계로, 대학을 활용한 지역 의료개혁 지원 등 방대한 지역현안 해결 추진
- **(주요내용)** 대학 내·외의 벽을 허물고 과감히 혁신하는 대학에 파격 투자함으로써 혁신 경쟁의 생태계를 조성하고 우수모델 확산 추진
- **(지정규모)** '24년 10개 내외 → '26년까지 30개 내외 지정 목표
 - ※ '23년 10개 기 지정 / '25년 및 '26년 5개 내외 지정 예정
- **(지정대상)** 소재지가 비수도권인 일반재정지원대학 또는 국립대학
 - ※ 신청 유형 : ①단일 대학이 단독 신청, ②2개 이상 대학이 지원기간 중 통합을 전제로 공동 신청, ③2개 이상 대학이 포괄적 연합 형태로 공동 신청
- **(지원사항)** 교당 5년간 약 1,000억 지원, 규제혁신 우선 적용, 범부처·지자체 투자 유도, 「지방대학육성법」 상 특성화지방대학 지정에 따른 행·재정 우대 등
 - * 연차별·대학별 지원금은 대학 규모, 실행계획 등을 반영하여 조정 가능
- **(자장방식)** 1단계(예바자장) → 2단계(본자장) 평가를 거쳐 글로벌대학위원회 최종 심의

Ⅰ 대학혁신 중점 방향 및 제시 과제 Ⅰ

중점 방향		제시 과제(예시)
대학 통합 연합	비교우위분야 대학 특성화	• 대학 비교우위 분야 특성화 및 학생 정원 감축 • 유사 중복 학과 상호 조정
	협력 고도화	• 통합 산학협력단, 융합대학 등 공동기관 운영 • 융합전공 개발 및 학생 공동 선발-교육
영역 확장	In Bound	• 출연연·기업 연구소 융합·연계 등 연구역량 집적 • 대학 및 지자체 부지 활용 및 기능 복합화
	Out Bound	• 해외 네트워크 구축 및 교육과정 수출 • 기업의 해외 진출 및 국내외 창업 지원
체질 개선	학사 운영 혁신	• 학제 구조 전면 개편 • 새로운 수업방식 도입
	재정 건전성 확보	• 교육과 비즈니스를 연계한 직접 수익 창출 • 지속 가능한 재원 확보
공통	학생 전공선택권 확대	• 학생 선택권 확대·융합교육 기반 학사구조 개편 • 교원 임용·보상·성과평가 제도 혁신
	지역기업 연계	• 지역특화 산업 맞춤형 조직개편 • 지역산업체와의 공동인재양성 및 연구개발 지원

※ 대다수 대학이 다수의 혁신과제를 복합적으로 제시